

조 례 안 예 고

창원시의회 공고 제2023 - 85호

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의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

「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의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창원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8월 30일

창원시의회의장 김 이 근

1. 자치법규명

「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의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」

2. 제정이유

본 조례는 창원시의회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피소 또는 기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의정활동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2조)
- 나. 소송비용 지원과 지원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3조 및 제4조)
- 다. 소송비용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5조)
- 라.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6조~제10조)
- 마.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의원의 소송결과 제출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11조)
- 바. 심의위원회 위원의 비밀유지 의무와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12조~13조)

4. 의견제출

가.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의회의장(참조: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제출 사항

- 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- 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의견 제출할 곳: 우)51435 /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

창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(전화:055-225-5375, FAX:055-225-4743)

라. 의견제출 방법: 우편, 팩스, 이메일(jeonhr1@korea.kr), 직접 방문 등

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의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(남재욱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35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8. 29.

발 의 의 원 : 남재욱 · 박강우 · 박선애 · 성보빈
이천수 의원(5명)

찬 성 의 원 : 구점득 · 김남수 · 김수혜 · 김현일 · 손태화
이종화 · 최정훈 · 홍용채 · 황점복 의원(9명)

1. 제안이유

본 조례는 창원시의회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피소 또는 기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의정활동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2조)
- 나. 소송비용 지원과 지원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3조 및 제4조)
- 다. 소송비용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5조)
- 라.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6조~제10조)
- 마.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의원의 소송결과 제출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11조)
- 바. 심의위원회 위원의 비밀유지 의무와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12조~13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 법령

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의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창원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 범위) ① 이 조례는 창원시의회 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한다.

1.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
2. 「지방자치법」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최된 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
3.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창원시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
4.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

② 이 조례는 의원이 사직 또는 퇴직한 후에 임기 중 제1항 각 호의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에도 적용한다.

제3조(소송비용 지원) ① 의장은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에 제6조에 따른 창원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의원이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

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.

제4조(소송비용 지원 기준 등) ① 제3조에 따른 소송비용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상소심은 원심에서 승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. 다만, 상소심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은 금액은 각 심급별 소송비용의 범위에서 의원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2. 수사과정의 피의자가 된 경우 검찰의 기소 전 단계까지만 지원한다. 다만,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별표의 각 심급별 지원금액(승소사례금은 제외한다) 범위에서 의원이 각 심급별로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지원 기준에 따른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.

제5조(소송비용 환수 등)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지원한 소송비용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.

1.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
 2.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(선고유예, 집행유예를 포함한다)이 확정된 경우
- 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후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의 범위 내에서 반환해야 한다.

1. 「민사소송법」에 따른 소송비용

2. 「형사소송법」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받은 선고유예 또는 벌금형 집행유예의 이유가 적극적인 의정활동의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. 이 경우 의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, 의장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감면한다.

제6조(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 의장은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심의위원회를 둔다.

1.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

2. 소송비용 지원 사항

3. 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사항

② 심의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자들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제3조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한 의원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③ 심의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자동 해산된다.

제7조(심의위원회 구성)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.

1. 창원시의회 의원 2명

2. 창원시의회 법률 및 입법 고문

3.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

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제8조(심의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,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, 장소,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. 다만,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9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(除斥)된다.

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
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
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

경우

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
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,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.

제10조(간사) ①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둔다.

② 간사는 의원 소송비용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.

제11조(소송결과 제출)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의원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제12조(비밀유지) 심의위원회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.

제13조(수당)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「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) 이 조례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은 조례 시행 후 수사가 개시되거나 기소 또는 피소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.

[별표]

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

1. 착수금

구분	지급기준		소송비용청구서의 구비서류
	사건별	착수금	
민사소송	가. 본안사건	(1)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(2)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(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한다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청서 ○ 소가증명원
	나. 환송심		
형사소송	○ 수사단계, 형사재판	○ 각 심급별 700만원 이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청서 ○ 판결문 ○ 고소장 (기타 형사 피의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) ○ 공소장
기타	○ 가처분신청	○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10	○ 신청서
	○ 헌법재판소 관할 ○ 대법원 전속관할	○ 1,000만원 이내	

2. 승소사례금

사건별 승소사례금의 지급기준	소송비용청구서의 구비서류
<p>가. 최종심에서 소송목적의 값 기준 100분의 60 이상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만 각 심급별 소송목적의 값 기준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되, 착수금에 승소비용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.</p> <p>- 최종심에서 100분의 60 이하로 패소한 경우 전 심급사건 지급 안함.(다만, 하급심에서 소송물 가액 기준 100분의 60 이상 승소한 뒤 상급심에서 소송대리인이 과실없이 변경된 경우 하급심 승소비용에 따른 금액은 지급한다.)</p> <p>나. 소의 취하, 청구의 포기·인낙(화해권고결정, 조정,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형식의 경우도 포함한다)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. 다만, 변론이 2회 이하 속행된 경우에는 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</p> <p>다. 중재 시에는 착수금에 경제적 이익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라. 소송사건이 상급심에 계류 중인 때에 수임변호사·변리사가 해당 사건의 소송대리를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는 하급심에서 승소하였다라도 승소사례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.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청서 ○ 확정증명원 ○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접수증

3. 그 밖의 비용

지급기준	구비서류
가. 인지대 : 실제로 필요한 금액 나. 송달료 : 실제로 필요한 금액 다. 검증비 : 실제로 필요한 금액 라. 감정료 : 실제로 필요한 금액 마. 증인여비 : 「창원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」 중 관련 공무원에 해당하는 금액 바. 복사비 등 그 밖의 경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신청서 • 인지·송달료의 납입영수증 • 검증비·감정료 등 납부명령서 중 해당서류

※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한다.

■ 지방자치법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구역, 조직, 행정관리 등

가.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·위치 및 구역의 조정

나. 조례·규칙의 제정·개정·폐지 및 그 운영·관리

다. 산하(傘下) 행정기관의 조직관리

라.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·감독

마. 소속 공무원의 인사·후생복지 및 교육

바.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

사. 예산의 편성·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

아. 행정장비관리,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

자. 공유재산(公有財産) 관리

차. 주민등록 관리

카.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

제70조(위원회의 개최) ①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,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개최한다.

② 폐회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이유서를 붙여 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.